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정희용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37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19.

발 의 자 : 정희용 · 이인선 · 강대식
배준영 · 최수진 · 박준태
김상훈 · 백종현 · 김용태
김선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참전유공자에게 생계지원금의 지급, 의료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6·25전쟁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6·25참전유공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이 법의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의료비 등의 고충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편, 대한민국6·25참전유공자회의 회원자격이 참전유공자 본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유족은 단체의 회원으로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,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중 1명에게도 대한민국6·25참전유공자회의 회원자격을 부여하여 그 유족이 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도 합당한

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(안 제7조 및 제18조 등).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참전유공자”를 “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참전유공자”를 “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”로 한다.

제18조제1항 중 “참전유공자 상호 간의”를 “참전유공자와 유족 상호 간의”로 한다.

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본문 중 “6·25전쟁 참전유공자 또는”을 “6·25전쟁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(배우자 또는 자녀 중 1명으로 한정한다) 또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회원이 될 수 있는 배우자의 경우,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. 다만,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6·25전쟁 참전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6·25전쟁 참전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녀의 경우, 양자(養子)는 6·

25전쟁 참전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본다.

④ 제1항에 따라 회원이 될 수 있는 유족의 순위는 배우자, 자녀의 순위로 한다. 다만, 순위가 같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, 자녀 간의 합의로 1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회원으로 한다.

제24조제1호 중 “참전유공자”를 “참전유공자와 유족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조(의료지원) ① <u>참전유공자</u>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는 의료기관(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비용(약제비용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(減免)하며,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.	제7조(의료지원) ① <u>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<u>참전유공자</u> 의 진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는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,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.	② ----- <u>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③ (생략)

제18조(대한민국6·25참전유공자회의 설립) ① 6·25전쟁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6·25참전유공자회(이하 “6·25참전유공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~ ④ (생략)

제19조(회원의 자격) 제2조에 따른 6·25전쟁 참전유공자 또는 같은 조 제2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월남전쟁 참전유공자는 각각 6·25참전유공자회 또는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. 다만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.

<신설>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8조(대한민국6·25참전유공자회의 설립) ① -----참전유공자와 유족 상호 간의-----

-----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19조(회원의 자격) ① -----
-----6·25전쟁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(배우자 또는 자녀 중 1명으로 한정한다) 또는-----

-----.

② 제1항에 따른 회원이 될 수 있는 배우자의 경우, 사실혼 관

<신 설>

<신 설>

제24조(사업) 6·25참전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.

1. 6·25전쟁 참전유공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위한 친목도

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. 다만,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6·25전쟁 참전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6·25전쟁 참전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녀의 경우, 양자(養子)는 6·25전쟁 참전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본다.

④ 제1항에 따라 회원이 될 수 있는 유족의 순위는 배우자, 자녀의 순위로 한다. 다만, 순위가 같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, 자녀 간의 합의로 1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회원으로 한다.

제24조(사업) -----
-----.

1. -----참전유공자와 유족

모	-----
2. ~ 5. (생략)	2. ~ 5. (현행과 같음)